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12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5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승남·김홍걸

소병훈 · 신정훈 · 양정숙

위성곤 • 윤미향 • 윤재갑

윤준병 • 정춘숙 • 주철현

한병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·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.

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하여 학교급식 경쟁입찰에 참여해왔음.

그런데 2010년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되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중소기업 간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, 2017년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했으나.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올해로 종료될

예정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
이에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효력을 10 년 더 연장하여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 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임(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 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5년"을 "1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	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12조의3의 개	제2조(유효기간)
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	<u>15</u>
<u>년</u> 간 효력을 가진다.	<u>년</u>